

국내 해상교량 관련 법령 및 절차에 관한 고찰

김진권* · 이윤석**

* 한국해양대학교 해사수송과학부 교수, ** 한국해양대학교 운항훈련원 교수

요약 : 최근 우리나라 여러 주요 항만에 해상교량의 건설이 진행 중이거나 계획 중에 있는데, 이들 교량의 설치 위치나 규모가 주로 경제적인 측면만을 강조하여 이루어짐으로써, 선박 통항안전에 위협을 주고 있으며, 이해 당사자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해상교량 관련 법령과 절차에 대한 조사 및 연구를 통하여 현행 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Key words : 해상교량, Bridge Permit, Bridge Administration, Navigation Clearance

1. 해상교량의 정의 및 소관부처

◆ 해상교량의 광의적 의미

- 항만, 예역, 수역시설, 정박지, 운어, 어촌 등 바다와 내수예역에 선박이 통항하는 모든 기항 수역 내 또는 위에 설치되는 교량(Bridge)

◆ 교량의 정의

- 도로, 철도 등과 같은 운송로 상의 장애 또는 병폐가 되는 계곡, 호수, 해안, 영안, 해협 등을 건너거나 도심의 건축물과 같은 지장을 또는 다른 도로, 철도, 수도 등을 통과할 목적으로 가설되는 구조물을 통칭하는 것으로 안전성과 사용성을 확보하는 통행수단으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문화, 환경, 상징성 등을 갖는 시설물이다.

2. 해상교량과 관련된 각종법령분석

◆ 도로관련법의 체계

```
graph TD; A[도로관련법의 체계] --> B[도로법]; A --> C[도로법]; A --> D[도로법]
```

◆ 도로설계법

- 도로의 계획에서부터 설계의 전 과정과 도로설계와 관련된 종합적 업무 내용을 체계적이고 일관되게 정립한 것임

◆ 도로설계지침

- 도로설계지침의 추진절차에 교통 및 환경평가를 기본설계에서 실시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 도로사업 단계별 세부업무에서 교량 구조물의 계획업무에 타당성 조사는 필요로 수행하는 업무로 지정하고 있음

◆ 교량설계시 설계 절차 요령

- 타당성 조사에 도로, 철도, 선박 등의 통과와 계획통수위 등을 고려하여 적정 평야고을 결정하고 구조물 형상을 명시하도록 명시
- 교량 계획단계에 지간구성을 고지사항으로, 철도, 선박의 행로(이) 갖는 적정성을 고려하여 지간 계획하도록 명시
- 상부구조 형식은 고지사항으로, 철도, 선박의 행로(이)를 고려, 적정 평야고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계획하도록 명시
- 부대시설설계는 선박 운항을 고려, 관리규정에 따른 표지표시 등을 설치하고 선박의 충돌을 억제하는 목적으로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명시

* 대표저자 : 김진권 jinkwon@hhu.ac.kr

**교신저자 : 이윤석 lys@hhu.ac.kr

2. 해상교통과 관련된 각종법령분석

◆ 해양수산부 관련 <항만법>

- 항만법은 항만의 지정·개발·관리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항만 건설을 촉진하고 항만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임
- 제2조 제6항 「‘항만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만구역 안의 시설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만구역 밖의 시설로서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고시한 것」
 - “항만시설”에 대한 정의 부분에 해상교통에 해당하는 일정교통시설이 포함되어 있으나,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고시한 것으로 명시하고 있음
 - 따라서 건교부 또는 지자체가 민자사업 또는 제3자사업으로 추진하는 해상교통에 대하여 ‘항만시설’로 지정 또는 고시하지 않을 경우 항만법의 적용 여부가 불분명함
 - 해상교통과 관련된 건설 기준 및 절차에 대해서는 명시되어 있지 않음

11

2. 해상교통과 관련된 각종법령분석

◆ 해양수산부 관련 <항만 및 어항 설계 기준>

- 목적 : 항만시설을 및 어항시설을 또는 연안정비시설물의 개설에 관한 일반적 기준과 순서를 정하는 것이며 항만분야에 관한 기술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도모하고 항만기술의 발전에 이바지 하는 것이 목적이임.
- 해상교통 관련 항목 : 항로록, 선호장, 방송공 등
- 항만 및 어항 설계 기준 종합 검토:
 - “항만시설”에 “일정교통시설”이 포함되어 있으나, 관리청에서 지정·고시한 것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관리청이 항만시설로 지정하지 않는 경우 법령을 적용하기가 곤란함.
 - 명시된 항로록, 선호장 등은 해상교통의 건설에 이용되는 개념과는 물리적으로 다른 개념임.
 - 항만 및 어항 설계 기준에 명시된 수역시설의 항로록을 해상교통의 설계기준으로 사용하기에는 개념이 상이하며, 영하고는 중요 높이에 대한 기준은 제시되어 있으나, 이용 대상 선택에 대한 기준 없음

12

2. 해상교통과 관련된 각종법령분석

◆ 해양수산부 관련 <항만시설의 기술 기준에 관한 규칙>

- 목적 : 이 규칙은 항만법 제28조의 규정과 항만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구조 및 시설에 관한 기술기준을 규정함으로 목적으로 함.
- 해상교통 관련 항목 : 제2조 [적용범위], 제3조 [수역시설], 제4조 [항로], 제12조 [일정교통시설]
- 항만시설의 기술 기준에 관한 규칙의 종합 검토:
 - 제2조에 의하면 기술 기준에 대한 적용 범위를 “항만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상교통의 경우 해당 법령을 적용할 수 없음.
 - 항만시설의 기술 수준의 일반 기준은 명시하고 있으나 해상교통과 관련된 적절적인 기술 기준은 규정되어 있지 않음
 - 제12조 일정교통시설에 교통 시설물의 이용 주체를 해상이용자인 선박이 아닌 자동차를 위한 안전한 구조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13

2. 해상교통과 관련된 각종법령분석

◆ 민간투자법 관련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 목적 : 사회기반시설에 관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여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사회기반시설의 확충·운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해상교통 관련 항목 :
 - 제2조[정의], 제3조[관계법률과의 관계], 제4조[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제5조[민간투자사업의 위험화의 설정], 제6조[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민간투자법의 종합 검토:
 - 도로법 제2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 및 도로부속설과 항만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항만시설도 민간투자법의 사회기반시설에 해당함으로 해상교통도 민간투자법의 적용대상이 됨.
 - 도로법 및 항만법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민간투자사업에 관하여 이별의 관계법률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함.
 - 추진 방식 및 절차에 대하여는 해상교통 관련 절차 문서에서 언급함.

14

3. 해상교통 건설관련 절차에 관한 분석

◆ 해상교통(사회간접자본시설) 건설의 일반 절차

- 해상교통 건설 형태 분석
- 민간투자사업 지정 및 선정 원칙
 -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민간투자사업으로 지정·선정·위탁하는 다음과 같은 민간투자사업 선정 원칙의 일반원칙에 적합해야 한다>
- ① 수익지 부담능력원칙
- ② 수익성원칙
- ③ 사업편의 원칙
- ④ 효율성 원칙

20

3. 해상교통 건설관련 절차에 관한 분석

◆ 해상교통(사회간접자본시설) 건설의 일반 절차

- 추진 절차 분석
- 가. 정부고시사업
 - ① 정부고시 사업의 요건
 - ② 정부고시 사업의 절차
- ① 종사업비 2천억원 이상 사업
- ② 종사업비 2천억원 미만 사업
- ③ 정부고시사업의 일반적인 사업추진 절차
- 나. 민간제한사업
 - ① 민간제한사업의 요건
 - ② 민간제한사업의 절차

21

3. 해상교통 건설관련절차에 관한 분석

◆ 해상교통사고간접자본시설) 건설의 일반 절차

- ## • 해상교통 건설 명태 분석

소유/운영 분류		해상교통 운영 주체	
해상교통 소유 주체	정부	민간	민간화
국영화	정부	민자화	민영화
민영화	민간	민영화	민영화

三

3. 해상교통 건설관련절차에 관한 분석

◆ 해상교통사고간접자본시설) 건설의 일반 절차

- 해상교량 건설 형태 분석
 - . 자본 투자에 따른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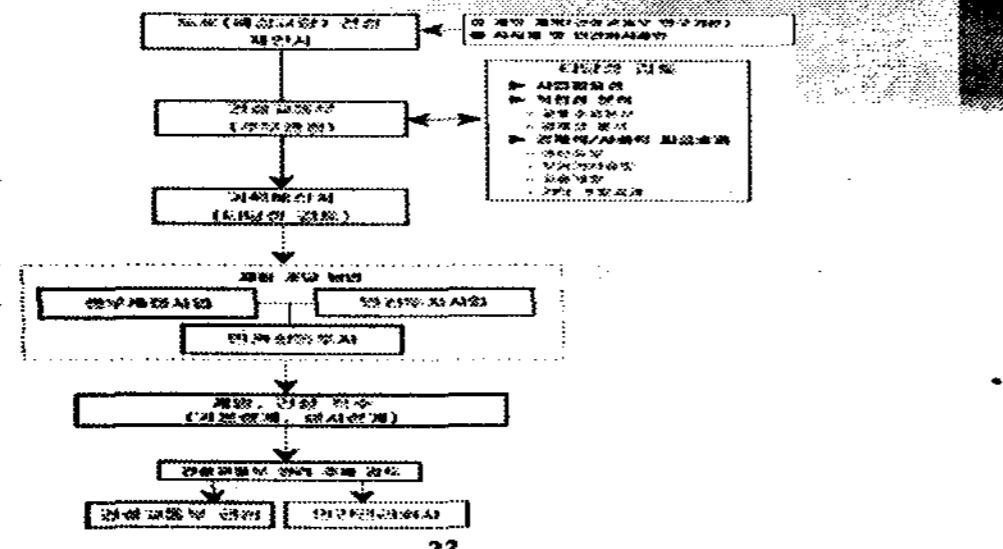
분류	건설 및 운영 주체
종부재정 사업	주요 사회간접자본사업(종부 건설 및 운영)
원전민간자본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투자 및 운영 민간 자본 참여 - 민관의 소유권 인정(관선 민영화) - 원경기간 후 소유권 정부 귀속(BIOT 방식) <p>운영 민간자본 참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에 대한 민간 자본 참여율이 크지 않을 때 - 민간위탁, 장기임대차, 계약수급
제3섹터방식	정부와 민간 기관의 협동투자
공기업 민간자본 참여 방식	정부가 공기업 설립(민간 주식대의 등록 참여)

18

3. 해상교통 건설관련절차에 관한 분석

◆ 해상교통(사회간접자본시설) 건설의 일반 절차

- 건설교통부에서 추진하는 해상교통 관련 철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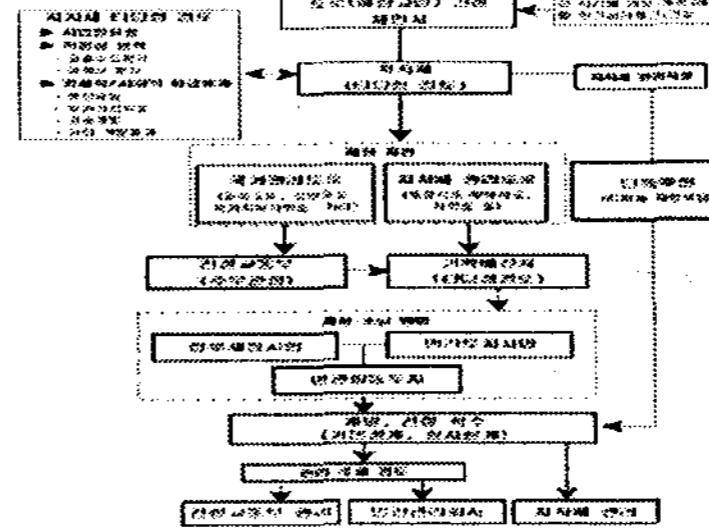


2

3. 해상교량 건설관련절차에 관한 문항

◆ 해상교통(사회간접자본시설) 건설의 일반 절차

- ### ■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해상교통 관련 정부



2

3. 해상교통 건설관련절차에 관한 분석

◆ 해상교통(사회간접자본시설) 건설의 일반 절차

- 국내 예상교량 건설에 따른 절차 사례 분석 및 문제점
가. 광양대교(정부재정사업)
 - 1) 주요 추진 일정
 - 2) 광양대교 주요 추진 절차 분석
 - 3) 예비타당성조사 절차 분석
 - 4) 시행사업자의 제언(유신코퍼레이션) 및 개선사항 - 나. 인천 제2연륙교(민간투자사업)
 - 1) 인천대교 건설 전제 추진 경과
 - 2) 예상교량 개혁시 문제점 및 개선방안
 - 3) 결론
 - 다. 울산대교(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 종료)
 - 1) 울산대교 건설 전제 추진 경과
 - 2) 울산대교 관련 민간제안사업 추진 절차 분석
 - 3) 울산대교 문제 사항 또는 개선사항 목록

卷之三

4. 검색

◆ 예상교량 건설 관련 국내법 개선 방향

- 국내 해상교통 건설에 따른 문제점 분석을 통한 개선 방향
 - 해상교통 건설과 관련된 근거 규정을 법령에 두는 것이 타당함
 - 해상교통 건설과 관련된 타 기관 관할 범위에 별도 규정을 두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 있음
 - 해상통영안전성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므로 현재 진행중인 “해양안전관리법” 상에 근거 규정 두는 것이 바람직함
 - 기존 국내 해상교통 건설사례 채기되었던 문제를 채기하기 위한 시방으로 관련 절차 진행시 해양수산부의 승인요건을 두는 것이 타당할 것임
 - 세부관련사항, 즉 해상교통 건설 관련 기준 등은 관련 고시로 두는 것이 좋을 것임

2